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0. 12. 15. (화)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 의 안 건

〈안건1〉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제1회 심의회 보류안건)

〈안건2〉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 범위(30년경과)

〈안건3〉 토지이동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

〈안건5〉 소송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1>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

I 개 요

- 제정근거 : 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주요 내용
 - 심의회 기능, 구성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회의 운영 사항 및 관련 서식 등
- 경과: 제1회 심의회 보류
 - 보류 사안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보류 사유 : 제4조 및 제8조가 법령의 정당한 위임에 의한 조항인지 여부 불명확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요청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심의
 -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해당사자인 기록물의 공개여부 심의
 - 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요청한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의 심의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등)

-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검토결과 : 삭제

- 당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를 근거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에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포함시켰으나,
- 본 조례의 조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되는 임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법정위원회도 적용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 본 조례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검토결과 : 삭제

- 본 조항은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 위촉시 서명한 「위촉 서약서」 상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 내에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8조의2 조항은 서울시 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내에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실익이 부족함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안)

※ 법령 상 미규정된 내용으로서 본 규정을 통해 추가된 사항 푸른색 표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서울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2. 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30년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3. 법 제37조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4.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및 제70조 제2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여부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 사항
6.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서울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제3조(심의회 구성 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명은 기록물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명은 서울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민간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 공개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등)

- ① 심의회는 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심의로 회의 개의를 대신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서면심의회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⑥ 간사는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등 공개·열람업무 관련 현황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서식 생략]

<안건2>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 범위 (30년경과)

1 취지

- 30년 경과에 따른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 재검토 필요성
 - 당초 비공개인 개인정보이더라도 개별 개인정보의 맥락 및 특성에 따라, 30년 경과에 의해 공개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2 검토사안

- 검토 사안1: 30년 경과 재산권 관련 기록의 개인정보 비공개범위
 - 민간인 성명, 주소의 공개범위(예: 토지조서의 토지소유자 목록)
: 현재 성명, 주소에 대해 전면 비공개로 열람 제공하고 있음

⇒ 검토결과

- ▶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일부(시군구) 공개
 - 의료기록 등 민감정보가 아니며, 30년 경과하여 일부 공개되어도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음
 - 가족 등 관계인이 기록 조사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 검토 사안2: 시보를 통해 공개된 이력이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 주요 사례
 - ▶ 과거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하던 시기에 현재와 다른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시보를 통해 고시,공고한 경우(예: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등)
 - ▶ 통상적으로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이나 법령에 의해 고시,공고하도록 규정된 정보

- 예시:

- 토지수용대상자의 성명,주소
- 문화재등록 고시 내용 중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국적상실자의 성명,주소,본적,생년월일,성별
- 주택조성사업 등의 시행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주소
- 공시송달 대상자의 성명,주소

- 특징 : 현재의 고시,공고에도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 고시,공고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있음

⇒ 검토결과

- ▶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비공개
- ▶ 공시송달의 경우 사안이 종료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처리
- ▶ 토지수용 등 토지소유자 명단(또는 유사한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기 공개이력 등을 고려하여 성명,주소 일부 비공개
- ▶ 그밖의 경우도 성명과 주소가 동시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므로 성명, 주소 일부 비공개
- ▶ 단, 개인 명의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수와 관련된 사안이며 널리 알려진 경우는 주소만 일부 비공개하고 성명은 전부 공개 가능

○ 검토 사안3: 개인증빙을 위한 첨부자료의 공개범위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선택적으로 가림처리 할 것인지, 해당 첨부자료 자체를 비공개 처리할 것인지 여부

⇒ 검토결과

- ▶ 전체 비공개 처리
- 해당 기록은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자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부를 가리는 것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고, 부분공개 처리의 실익이 없음

<안건3>

토지이동 관련 기록의 공개여부

I 기록개요

- 생산부서 : 각 구청 지적부서
- 생산년도 : 30년 경과(1910년대 ~ 1970년대)
- 주요 기록 및 포함정보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개요	이동측량(기 등록지의 분할이나 경계정정 등을 요할 때 행하는 세부측량)을 실시한 후 작성된 도면	토지 신규등록, 분할, 등록 전환 등 면적의 이동이 있을 때 측량을 통해 면적을 산정해 등록한 장부
포함 정보	토지의 소재, 경계, 지번, 축척 등의 정보 및 측량정보(일자, 측량자 성명·인장), 검사정보(일자, 검사자 성명·인장), 접수번호·일자, 처리번호·일자, 수정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회차별 산출수, 적산법, 지번별 산출지적, 보정지적, 원지지적, 신규지적 교차, 결정지적, 등급, 지목, 임대가액/수확량,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량	서울시 전역 대상 약21만건	서울시 전역 대상 약28만건

- 현재까지의 공개 관행
 - 지적 소관청이 자치구이므로, 민원인이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자치구에서 공문을 통해 시에 사본을 요청, 발급 ⇒ 자치구에서 공개여부 판단하여 정보공개 결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상 별도의 발급절차가 규정된 '지적공부'에 해당되지는 않음

(지적공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기록관→기록원 이관 시 공개값 : 모두 '공개'
- 개인이 기록원으로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제공 중

2

공개검토① 토지이동측량원도

○ 유관기관(자치구,시) 의견조회 결과('20.3월)

▶ 공개 의견(시 기록관, 중구 등 9개 기관(부서))

- 사유: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였고, 특별한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부분공개 의견(용산구 등 2개 기관)

- 비공개대상정보 : 측량자,검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6호)

▶ 비공개 의견(시 토지관리과, 광진구 등 5개 기관(부서))

- 사유

- 지적측량 의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7조에도 소유자를 대신하여 측량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고 그 외는 측량을 신청 할 수 없음.
-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생산되는 문서(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면적측정부)를 인터넷 등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여부의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지적공부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임.
- 현재 지적도와 다른 사항 발견시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 발생 우려

※ '1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례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중앙행정심 2011-1900)

⇒ 검토결과

▶ 공개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위촉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 유사 기록인 '지적도'가 민원24 등을 통해, 지적도의 기초원도인 총독부 '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현재 공개로 온라인 서비스 되고 있음
-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공개'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 단, 온라인 원문공개는 보류하고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 실시

- 전면적인 온라인 원문공개시 토지관련 혼란 및 불필요한 분쟁 소지
- 또한, 현재 시스템상 워터마크 등의 최소한의 정보보호나 출처 식별조치를 지원하지 못하는 여건이므로 전면적인 원문파일 공개는 보류

3

공개검토② 면적측정부

○ 유관기관(자치구,시) 의견조회 결과('20.3월)

▶ 공개 의견(시 기록관, 중구 등 10개 기관(부서))

- 사유: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였고, 특별한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비공개 의견(시 토지관리과, 광진구 등 5개 기관(부서))

- 사유: 면적측정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량을 통해 면적을

산정해 등록한 장부로 면적 성과결정한 내용 등에 관한 정보 (허용오차,도곽신출량 등)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검토결과

▶ 공개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단, 온라인 원문공개는 보류하고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 실시

- 전면적인 온라인 원문공개시 토지관련 혼란 및 불필요한 분쟁 소지
- 또한, 현재 시스템상 워터마크 등의 최소한의 정보보호나 출처 식별조치를 지원하지 못하는 여건이므로 전면적인 원문파일 공개는 보류

<안건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

1 기록개요

- 생산부서 : 서울시 도시계획과
- 생산시기 : 30년 경과(1950년대 이후)
- 포함 정보
 - 위원 및 참석자 명단(성명,직위 등)
 - 심의안건
 - 발언자 및 발언내용
 - 심의결과

2 공개검토

- 생산부서의 회의록 공개 현황(도시계획과)
 - 심의자료: 심의후 즉시 공개
 - 회의록: 공개 요청시, 심의 30일 경과일부터 발언내용 포함하여 열람 제공
 - 비공개 대상정보 : 회의록에서 발언자 성명 비공개
 - 부분공개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적용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

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회의록)

-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검토 사안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와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의 '30년 공개원칙'의 관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에 의해 비공개되는 정보가 30년이 경과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 ▶ 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30년 경과시 사안별 재검토 필요

○ 검토 사안2

- : 도시계획위원회 발언자의 성명이 국토법상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결과

- ▶ 발언자의 성명이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될 것이나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개 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안건5>

소송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1 기록개요

- 생산부서 : 법무담당관 및 소송 수행부서
- 주요기록
 - 소장, 판결문,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 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신문조서, 송무용전
- 생산시기 : 30년 경과 / 30년 미경과

2 공개검토

- 검토 사안1 :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 정보 공개여부
 - 사건번호
 - ▶ 공개 의견 : 사건번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검색을 통해 당사자 등의 정보가 알려질 위험은 사건정보 제공시 익명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건번호 공개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89)
 - ▶ 비공개 의견 : 사건번호 공개시 사건검색을 통해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함
 - 소송당사자(상대방) 정보의 비공개범위
 - ▶ 소송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성명 전체 비공개 여부
 - ▶ 소송상대방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비공개 범위
 - 소송대리인 정보
 - ▶ 서울시측 및 상대방 소송대리인 개인의 성명,법인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의 공개여부

⇒ 검토결과

▶ 사건번호 : 공개

- 사건번호 자체만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외부의 다른 방법을 통한 정보의 조합을 우려하여 사전에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소송 당사자 정보: 비공개

- 개인의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등 전체 비공개(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제외)
- 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

▶ 소송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정보: 공개

- 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

- 검토 사안2 : 소장, 판결문, 청구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신문 조서, 송무용전 등 소송진행 기록

⇒ 검토결과

▶ 30년 경과 기록물

- 30년 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을 특정,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30년 미경과 기록물

- 관련 사안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생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2020년 제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용)

2021년 3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2020년 제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0. 12. 15.(화) 14:00~16:20
-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 참 석 : 7명
 - 위촉위원(3): 이상미(위원장), 김희란, 박종연 ※ 김성순 위원 불참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권도석(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1): 서수련(간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 ◆ 안 건
 - 〈안건1〉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제1회 심의회 보류안건)
 - 〈안건2〉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 범위(30년경과)
 - 〈안건3〉 토지이동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
 - 〈안건5〉 소송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 회의결과
 - 〈안건1〉 가결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외한 규정으로 정함
 - 〈안건2〉 가결
 - 30년 경과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일부(시군구) 공개
 - 시보를 통해 공개된 이력이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비공

개, 주소와 성명이 같이 포함된 경우 주소,성명의 일부 비공개, 다수와 관련된 사안이며 널리 알려진 경우 주소는 일부 비공개, 성명은 전부 공개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증빙용 첨부자료의 경우 해당 첨부자료 자체를 비공개

〈안건3〉 가결

- 토지이동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는 공개로 하되, 온라인 원문공개가 아닌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 실시

〈안건4〉 가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산 30년이 경과시 사안별 공개여부 재검토 필요
- 30년 경과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의 성명이 국토법상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안건5〉 일부가결

- 사건번호 공개, 소송 당사자 정보 비공개(공공기관 제외), 소송 대리인 정보 공개
- 소송진행 기록의 경우 일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안별 심의 필요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김성순 위원이 사정상 불참하여 전체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제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의됨
-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음. 회의 종료후 의결

서에 대해 위원별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 **〈안건1: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위원 : 기록원 검토 의견과 동일

〈위원장〉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제외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지

○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 의결 하겠음

▶ **〈안건2: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 범위(30년경과)〉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위원 : 기록원 검토결과에 동의

- ○○○ 위원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는 방향이 필요함

〈○○○○ 위원〉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증빙을 위한 첨부자료의 경우 대상 첨부자료 자체는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내역과 비공개 사유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

○ 30년 경과한 재산권 관련기록에서 성명의 성(姓)과 주소

일부(시군구)를 공개한다는 내용(사안1)과 시보로 공개된 이력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그밖의 경우 성명,주소 일부 비공개, 단 개인명의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등 다수와 관련된 사안이며 널리 알려진 경우는 주소만 일부 비공개하고 성명은 전부 공개한다는 내용(사안2),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증빙을 위한 첨부자료의 경우 전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사안3)의 기록원 검토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지

○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 의결 하겠음.

▶ <안건3: 토지이동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위원 : 기록원의 검토결과에 동의

▶ ○○○ 위원의 추가의견 : 해당 기록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정보 이슈가 없음에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효율적 활용’, 제4조 제2항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가능성’ 등 법문언을 고려하였을 때 분쟁의 가능성은 부적절한 논거로 판단됨

- ○○○ 위원 : 토지이동 관련 기록의 경우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재산취득의 목적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공개보다는 대면 열람 방식으로 제한적 공개가 필요할 수 있음

<○○○ 위원>

- 대상 기록의 수량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함

〈○○○ 위원〉

-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구분하여 수량 파악되어 있는지

〈간사〉

- 1910년대~1970년대의 서울시 전역의 토지이동에 대한 기록으로 측량원도는 약21만건, 면적측정부는 약28만건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다량의 기록으로서 한번의 심의로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자 함

〈○○○ 위원〉

- 공개여부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이슈가 있음. 국가기록원에서도 토지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워터마크 등 온라인 제공의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열람방식의 제한적 공개 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위원〉

- 동일한 기록물이라도 어디에서 정보공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간사〉

-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사 서울기록원에서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서울기록원에서 열람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다만 본 안건의 토지이동기록은 지적공부가 아닌 일반 기록으로서 서울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서울기록원의 공개결정으로 열람제공함

〈위원장〉

- 토지이동측량원도와 면적측정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개하되,

온라인 원문공개가 아닌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 실시라는 기록원의 상정안에 모두 동의하는지

○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 의결하겠음

▶ <안건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 위원 : 기록원의 검토결과에 동의

▶ ○○○ 위원의 추가의견 : 정보공개법 제2조, 제4조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조, 제3조, 제8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됨

▶ ○○○ 위원의 추가의견 : 30년이 경과하였다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 할 지라도 사안에 따라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 가능

▶ ○○○ 위원의 추가의견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의 경우 역사적 가치와 활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함

<위원장>

○ 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30년 경과시 사안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사안1)과, 30년 경과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상 발언자의 성명이 '공개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능하다(사안2)는 서울기록원의 상정안에 모두 동의하는지

○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 의결 하겠음

▶ <안건5: 소송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위원 : 기록원의 검토결과에 동의

▶ ○○○ 위원의 추가의견 : 법 제38조에 근거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경우 안전지상 검토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공개하거나 공개여부 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런데 검찰과 법원도 판결서 등 일부 문서를 영구보존할 뿐 다른 대부분의 사건 기록들은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 제27조의 2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검찰과 법원의 기록관리 상황 참고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여부 결정할 필요 있음

<위원장>

○ 30년이 경과해도 소송기록에 대해 폐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간사>

○ 소송기록이라고 해도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사안이나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부서에서 기록물철에 대한 보존기간을 다르게 책정하여 보존하게 됨

<○○○ 위원>

- 사건번호나 소송대리인 정보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는 않음
- 소송당사자 정보는 내용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하므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임

- 소송관련 기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간사〉

-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고 파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다만, 기록원에서 보유하는 기록은 서울시가 수행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본도 상당함

〈○○○○ 위원〉

- 사건관련 기록은 하나의 건이 사실상 하나의 철이고, 그 안에는 판결문, 소장, 변론서 등 다양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본이 아닌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건 내의 세부 기록마다 공개가능한 것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임.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건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과후 검찰에서 폐기되고, 법원에서는 판결문만 보존되는데, 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검찰, 법원 등에서도 보유중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
- 원래의 생산기관인 검찰, 법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록이 서울기록원에서만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보유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기록을 공개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안이나 개별 건마다 개별적으로 공개여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검창청의 경우 일반적인 기록관리기준표가 아니라 사건 유형별로 다른 분류기준에 의해 보존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안건 상정안에서는 30년 경과 여부만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른 기관에서의 보존기간과 공개여부도 확인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국가기록원이 일제 강점기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소장,

판결문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때문에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사례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임

〈위원장〉

- 사건번호나 소송대리인 정보는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사건번호 만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위원〉

- 대상기록의 분량이 많은지

〈간사〉

- 기본적으로 소송기록은 적어도 부분공개 대상이고 전체공개인 기록은 거의 없음. 다만, 부분공개를 위한 비공개대상정보 마스킹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에 상정한 것임
- 사건 기록 자체의 공개여부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기록물철이나 건 목록의 제목 상 사건번호가 포함된 경우 처리방안이 궁금함

〈○○○ 위원〉

- 소송기록은 건별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능동적 공개보다는 수동적 공개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위원〉

- 사건번호나 소송대리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지는 않지만, 소송관련 기록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 소송기록의 공개여부는 사안별로 소송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건번호는 공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위원〉

- 온전하게 생산된 기록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됨. 기록의 구성 자체가 정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위원장〉

- 검토사안1(사건번호와 소송대리인 공개, 소송당사자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인지

〈일동〉

- 동의함

〈위원장〉

- 검토사안2(소송진행기록의 공개여부)는 사안별로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될것인지

〈일동〉

- 동의함

▶ **의결서 내용 확인**

〈간사〉

- 안건1 ~ 안건4는 가결
- 안건5는 검토사안2의 경우 “소장,판결문,청구서 등 소송진행기록의 경우 일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심의하도록 함”이라는 검토의견으로 일부가결

▶ **폐회**